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 보 고 서

제 7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다일공인회계사감사반

# 목 차

## I.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	---

## II.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5
-------------	---

운영성과표 .....	7
-------------	---

주석 .....	9
----------	---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이사회귀중

2019년 3월 6일

##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기타사항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최형호가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8년 2월 28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2, 동명빌딩 4층  
다일공인회계사감사반(제375호)

공인회계사 김 승 규 (인)

공인회계사 임 덕 섭 (인)

공인회계사 이 봉 학 (인)

2019년 3월 6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재 무 제 표

##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 제 7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 제 6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영 태 영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 화) 031-290-3515

재 무 상 태 표

제 7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6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 수원문화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7(당) 기	제 6(전) 기
자산		
I. 유동자산	9,341,820,951	8,234,119,739
(1) 당좌자산	9,341,820,951	8,234,119,739
현금및현금성자산	9,328,824,781	4,859,037,861
단기금융상품	-	3,366,814,618
미수금	1,249,600	301,680
선납세금	11,746,570	7,965,580
(2) 재고자산	-	-
II. 비유동자산	-	-
(1) 투자자산	-	-
(2) 유형자산	-	-
차량운반구	69,385,580	66,101,580
감가상각누계액	(54,321,028)	(63,046,967)
자산취득보조금	(15,064,552)	(3,054,613)
비품	2,630,870,560	2,489,892,800
감가상각누계액	(2,210,152,373)	(1,840,419,769)
자산취득보조금	(420,718,187)	(649,473,031)
(3) 무형자산	-	-
(4) 기타비유동자산	-	-
기타보증금	152,789,000	152,789,000
자산취득보조금	(152,789,000)	(152,789,000)
자산총계	9,341,820,951	8,234,119,739
부채		
I. 유동부채	5,802,024,453	4,789,086,090
미지급금	24,959,830	23,008,920
예수금	86,403,451	77,854,125
사업운영비선수금	2,579,614,197	1,563,698,097
민간위탁예수금	2,782,279,985	2,848,072,249
미지급비용	323,739,250	262,162,999
미지급반환금	5,027,740	14,289,700
II. 비유동부채	34,401,270	16,003,600
퇴직급여충당부채	34,401,270	16,003,600
I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14,829,236	62,215,431
부채총계	5,951,254,959	4,867,305,121
순자산		

과목	제 7(당) 기		제 6(전) 기	
I. 기본순자산		3,390,565,992		3,366,814,618
기본순자산		3,390,565,992		3,366,814,618
II. 보통순자산		-		-
순자산총계		3,390,565,992		3,366,814,618
부채 및 순자산총계		9,341,820,951		8,234,119,739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 수원문화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 기	제 6 (전) 기
I. 사업수익	29,013,756,671	27,029,093,671
수원시출연금수익	17,007,884,813	17,496,581,793
민간위탁사업수익	8,597,517,778	6,778,843,538
국비보조수익	3,408,354,080	2,753,668,340
II. 사업비용	29,013,756,671	27,029,093,671
직원급여	6,944,240,800	6,385,466,610
퇴직급여	515,394,330	588,532,300
여비교통비	143,038,919	208,864,774
도서인쇄비	723,040	238,150
사무관리비	1,866,287,834	1,787,640,609
공공운영비	1,576,122,110	1,519,099,722
행사운영비	3,005,528,833	3,864,780,380
업무추진비	118,231,200	100,741,000
연구용역비	38,180,000	60,950,000
전산개발비	4,750,000	5,816,000
행사실비보상금	204,453,290	77,001,500
기타보상금	174,937,820	297,188,560
포상금	256,322,910	225,298,750
보험부담금	621,998,165	537,497,460
민간경상보조	162,590,352	128,138,099
민간행사보조	1,122,936,550	1,138,002,499
시설비	97,260,900	324,078,140
자산취득비	154,887,760	247,247,240
민간위탁(해설사운영)	286,658,030	279,456,410
민간위탁(여행박람회)	185,276,917	93,477,520
보조금(거리예술)	24,717,000	29,494,190
보조금(문화제)	451,895,630	309,766,530
순수기부금	60,000	7,405,180
민간위탁(문화예술발전)	81,897,711	78,464,780
민간위탁(어린이도서관)	2,288,258,430	2,161,683,470
민간위탁(수원시립공연단)	2,061,564,100	2,166,202,420
국고보조금	3,538,618,140	2,503,664,998
대행사업비	3,086,925,900	1,902,896,380
III. 사업이익	-	-
IV. 사업외수익	76,509,678	52,924,061

과 목	제 7 (당) 기		제 6 (전) 기	
이자수익	76,509,678		52,924,061	
V. 사업외비용		-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6,509,678		52,924,061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		-
IX. 법인세비용		-		-
X. 당기운영이익		-		-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 수원문화재단

## 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수원시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정책사업과 관광활성화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사업 등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046호(2011.8.5. 제정)를 통하여 재단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 재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인설립등기일 : 2011년 12월 7일
- (2) 재단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남창동)
- (3) 대표자: 영 태영
- (4) 출연상황 :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10,000천원으로 전액 수원시가 출연하였습니다.
- (5) 재단의 목적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수행  
수원 화성시설, 문화공간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수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수원학 조사 연구  
수원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2. 주요회계처리방법

당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당 재단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통화(지폐, 주화)와 통화대용증권을 말합니다. 통화대용증권이란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으로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등이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말합니다.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금융상품

재단은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3)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목	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표시방법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5) 복구비용의 회계처리방법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6)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충당할 정부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부보조금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관련 조건이 충족되어 사용되는 시점에 관련 비용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5)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 (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출에 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1) 출연금 수익

재단은 수원시로부터 출연금을 출연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민간위탁사업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재단은 위탁사업계약으로부터 수입은 위탁사업비용이 발생한 만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수익 수령액 중 미집행잔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6) 퇴직급여

재단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재단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연금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직원의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7) 순자산

### 1)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2)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으로,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과 임의적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8)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

당 재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35호)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은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기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3.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 재단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 4.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된 선납분으로 차기 회계연도에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 5. 유형자산의 내용

당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차량운반구	-	13,910,000	1,000	1,899,061	(12,009,939)	-
비품	-	140,977,760	-	369,732,604	228,754,844	-
계	-	154,887,760	1000	371,631,665	216,744,905	-

### 6. 사업운영비 선수금

사업운영비 선수금은 수원시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 중 미 집행잔액으로, 수원시에 반납하거나 차기 회계연도의 사업예산에 충당될 금액입니다.

### 7. 민간위탁예수금

민간위탁예수금은 국가, 수원시,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특정 행사를 위해 지원받는 금액 중 집행중이거나, 미집행 잔액으로서 지원처에 반납하거나 차기 회계연도에 사업예산에 충당될 금액입니다.

8. 미지급반환금

미지급 반환금은 수원시, 기타의 지원처에 반환이 확정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반환된 금액입니다.

9. 퇴직급여충당부채

(1) 당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기초잔액	16,003,600
충당부채설정액	32,918,630
퇴직금지급액	(14,520,960)
기말잔액	34,401,270

(2) 당기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거래처	금액
기업은행	482,475,700

1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62,215,431	74,184,98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6,509,678	52,924,0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고유목적사업사용액	(23,895,873)	(64,893,614)
기말잔액	114,829,236	62,215,431

## 11. 순자산 변동

재단의 당기 순자산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3,366,814,618	-	-	3,366,814,618	-	-	-	-	-
회계변경 등	-	-	-	-	-	-	-	-	-
수정후순자산	3,366,814,618	-	-	3,366,814,618	-	-	-	-	-
기본순자산증감	23,751,374	-	-	23,751,374	-	-	-	-	-
당기운영이익	-	-	-	-	-	-	-	-	-
적립금의적립	-	-	-	-	-	-	-	-	-
당기말	3,390,565,992	-	-	3,390,565,992	-	-	-	-	-

## 12.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의 부문별 정보

1) 재단의 당기 재무상태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목	제 7 (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I. 유동자산	9,341,820,951	9,226,991,715	114,829,236
현금및현금성자산	9,328,824,781	9,225,742,115	103,082,666
미수금	1,249,600	1,249,600	-
선납세금	11,746,570	-	11,746,570
II. 비유동자산	-	-	-
(1) 투자자산	-	-	-
(2) 유형자산	-	-	-
차량운반구	69,385,580	69,385,580	-
감가상각누계액	(54,321,028)	(54,321,028)	-
자산취득보조금	(15,064,552)	(15,064,552)	-
비품	2,630,870,560	2,630,870,560	-
감가상각누계액	(2,210,152,373)	(2,210,152,373)	-

자산취득보조금	(420,718,187)	(420,718,187)	-
(3) 기타비유동자산	-	-	-
기타보증금	152,789,000	152,789,000	-
자산취득보조금	(152,789,000)	(152,789,000)	-
자산총계	9,341,820,951	9,226,991,715	114,829,236
부채			
Ⅰ. 유동부채	5,802,024,453	5,802,024,453	-
미지급금	24,959,830	24,959,830	-
예수금	86,403,451	86,403,451	-
사업운영비선수금	2,579,614,197	2,579,614,197	-
민간위탁예수금	2,782,279,985	2,782,279,985	-
미지급비용	323,739,250	323,739,250	-
미지급반환금	5,027,740	5,027,740	-
Ⅱ. 비유동부채	34,401,270	34,401,270	-
퇴직급여충당부채	34,401,270	34,401,270	-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14,829,236	-	114,829,236
부채총계	5,951,254,959	5,836,425,723	114,829,236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3,390,565,992	3,390,565,992	
기본순자산	3,390,565,992	3,390,565,992	
순자산총계	3,390,565,992	3,390,565,992	-
부채및순자산총계	9,341,820,951	9,226,991,715	114,829,236

(2) 재단의 당기 운영성과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 목	당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	29,013,756,671	29,013,756,671	-
수원출연금수익	17,007,884,813	17,007,884,813	-
민간위탁수익	8,597,517,778	8,597,517,778	-
국비보조금수익	3,408,354,080	3,408,354,080	-
II. 사업비용	29,013,756,671	29,013,756,671	-
사업수행비용	26,155,258,477	26,155,258,477	-
일반관리비용	2,858,498,194	2,858,498,194	-
III. 사업이익	-	-	-
IV. 사업외수익	76,509,678	-	76,509,678
이자수익	76,509,678	-	76,509,678
V. 사업외비용	-	-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6,509,678	-	76,509,678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	-	-
IX. 법인세비용	-	-	-
X. 당기운영이익	-	-	-